대구안심 시티프라디움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Ⅰ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702-1번지

▮ 공급규모 : 분양주택 총 468세대 (지하2층~지상14층, 6개동)

▮ 일정 계획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18. 05. 17.(목)	일간신문, 대구안심 시티프라디움 홈페이지 http://dg-pradium.co.kr
• 견본주택 개관	2018. 05. 18.(금)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356-3번지
• **접수일자**	2018. 05. 23.(수) [08:00~17:30]	**인터넷 청약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 단, 인터넷 청약 불가 시(장애인, 노약자 등) 현장접수 가능(10:00~14:00)**
• 당첨자발표	2018. 06.04.(월)	당사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아파트투유
• 동호수발표		
• 정당계약일	2018.06.18.(월) ~ 20.(수)	당사 견본주택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노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현장접수 가능

Ⅱ 특별공급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8.05.17.목)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세대주로 한정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이주대책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특별공급 대상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단, 이전기관 종사자 및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거주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5.17.)이전 해당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단, 대구광역시 고시 제 2017-134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2017.11.17.이전)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나,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 입주자저축 요건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하며, 제36조 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청약예금 :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구 분 (전용면적 기준)	거주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기타광역시**	**경상북도 및 기타지역**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또는 그 세대원(배우자를 포함하며,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 또는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후 동시에 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여부 판단 대상자의 주택소유 여부에 의거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제외)와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자는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습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에 의거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시 배정세대수 및 예비입주자 까지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예비입주자 명단도 함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예비입주자는 추천순위 미포함)

▮ 주택형별·기관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예비입주자 포함)

구 분	84.98A		계
	배정세대수	예비입주자	
①장애인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10	4	14
②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9	4	13
③10년 이상 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9	4	13
④중소기업근로자 (대국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9	4	13
⑤북한이탈주민 (하나원)	9	4	13
소계	46	20	66

▮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서류 접수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
2.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당첨자 선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릅니다.
4. ⑤기타 특별공급대상자의 청약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해당기관을 정한 후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5. 해당기관의 우선순위가 없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1. 예비입주자는 배정세대수의 40% 범위(소수점 이하 절상) 내에서 선정합니다.
   (추천 대상자에 예비입주자 명단 기재. 단, 추천순위는 미포함)
2.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3.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우선합니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해제)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1번(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가능하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Ⅲ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5.17.목)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각 1통)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O		본인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O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감증명서	O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인감도장	O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주민등록증	O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O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		O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주민등록표등본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가족관계증명서		O	본인	단독세대 이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O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통장미사용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위임장 1부, 청약신청자 인감증명서(위임용) 1부, 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Ⅳ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2018.05.23.(수)예정]에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접수.**
신청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단, 인터넷 청약 불가 시 견본주택에서 신청접수)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356-3 대구안심 시티프라디움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8.05.17.(목)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견본주택,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 (http://dg-pradium.co.kr)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5.17.목)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 공급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안심 시티프라디움

분양문의 1544-1152

투시도


시티프라디움

단지배치도


근린공원
106동
105동
104동
부출입구
상가커뮤니티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수변공원
힐링숲가든
주출입구
101동
102동
103동



■ 현장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702-1번지

■ 견본주택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356-3번지

■ 문의전화 : 1544-1152 / Fax : 053)963-8722

■ 홈페이지 : http://dg-pradium.co.kr